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주위적으로, 2,581,666,988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원고와 피고는 1976. 11.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4. 7. 1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가 2001. 2. 1.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딸

임CC(19 . . .생), 임DD(19 . . .생)와 아들 임EE(19 . . .생)을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교제하여 오다가 임신 7개월이던 1976. 11.경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가 원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부산 ●구 ●●가 소재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77. 2. 6. 첫 딸 임CC이 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자갈치시장 인근 등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다) 원고는 자주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 피고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고와 자주 다투었다. 원고는 신혼 무렵부터 피고의 머리와 왼쪽 눈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 원고는 1994년경부터 삼계탕 집 여주인, 안FF 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이 사건 가사조사 과정에서 "삼계탕 집 여자로부터 용돈을 받고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가 그 남편이 부인을 놔달라고 부탁하여 정리했으며, 안FF와 2, 3년 동안 만나면서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만나지 않은지 오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원고와 피고는 1994. 7. 1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 1996년경 피고를 찾아가 삼계탕 집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다시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에 응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다시 동거하였다.

바)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인 1998. 12. 28.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판을 들이받는 등의 일로 2001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2002년경 확정되는 일로 면허가 취소되어, 2002. 1. 28. 다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1. 2. 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 7.경 부산 GG구 HH

동 소재 모텔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 12.경 위 모텔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아) 피고는 모텔 운영에 힘을 쏟았으나, 원고는 자주 술을 마시면서 주취 상태에서 피고를 종종 폭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즉 피고는 원고를, 2007. 11.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라는 병명으로 II병원에 입원시켰고, 2010년경에도 II병원에 2~3개월간 입원시켰으며, 2011. 1. 8.부터 2011. 2. 18.까지 ●●●병원에 입원시켰다.

자)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던 중인 2011. 2. 15. 이 법원 2011드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퇴원하였다가, 2011. 2. 17. '본인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과 일하는 직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 약속한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길 때에는 가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후 2011. 2. 23. 그 소를 취하하였다.

차) 그러나 원고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2011. 6.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약 1개월 후 담석증 발병으로 퇴원하였다.

카) 원고와 피고는 2011. 7. 2.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다.

타)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따로 거주하니 원고의 간섭이 없어 편하다는 이유로 이혼에 응하겠다고 이혼 의사를 번복한 후, 2013. 5. 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2, 3, 제21호증, 을 제3, 4, 9호증, 제10호증의 1~4, 제11~13호증, 제16~18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의료법인◎◎◎◎I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2)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반소 위자료 청구 :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

[판단근거]

가)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기간 원고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전반적인 혼인생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의 오랜 음주 습관과 이로 인한 폭력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아들 임EE과 공모하여 원고를 모텔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모텔 사업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임의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직접 또는 아들 임EE의 행동을 방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는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32호증의 1~3, 제36호증의 1, 2, 제3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2호증의 4~7, 제39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로부터 반복하여 폭행당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혼인관계의 직접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

다.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6.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재산 형성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결혼할 무렵 JJ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그만두고, 피고와 함께 자갈치시장 입구 등에서 삶은 오리알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였다.

나) 원·피고는 1983. 9. 30.경 노점상 등을 하면서 모은 약 4,000만 원으로 부산 ○○○구 ○○○동 ○○○-895 대 165㎡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1983. 10. 4. 원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동 제1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6. 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피고는 1988년경 ○○○동 제1상가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그 1층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88. 5. 12. 부산 GG구 KK동 ○○○-3 답 496㎡, 같은 동 ○○○-4 답 1488㎡, 같은 동 ○○○-5 답 1488㎡를 매수하여 1988. 5.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1년경 이종사촌형의 권유로 피고와 함께 장미농사를 시작하였다가 실패하여 커다란 손해를 보았고, 그러던 중인 1994. 7. 원·피고는 이혼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1996년경 피고와 재결합하면서 피고에게 개인택시를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2001. 1. 7.경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장미농사를 그만두고 다시 생선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05년경 모텔 영업에 관심을 가지던 중 광고를 보고 2005. 7. 15. 부산 GG구 HH동 ○○○-12 대 1,261㎡ 및 그 지상 모텔(지하 1층, 지상 6층, 당시 명칭 'MMMMM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05. 8.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을 물색하는 외에도 2005. 12. 23.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6. 2.경 위험물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의 모텔 영업은 피고가 주도하였다.

아) 원·피고가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피고는 2006. 11.경 낙찰자인 NNNNNNNNNN유동

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12억 원에 매수하고, 2006. 12. 29.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피고는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9억 원을 대출 받았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부산 GG구 KK동 ○○-3 답 496㎡, 같은 동 ○○-4 답 1,488㎡, 같은 동 ○○-5 답 1,488㎡를 2006. 1.경 매도한 대금 1억 9,950만 원 중 상당액을 보태었다. 또한 피고는 2010. 3. 5.경 위 모텔과 인접한 부산 GG구 HH동 ○○-15 임야 400㎡(이하 'HH동 임야'라 한다)를 대금 1억 8,755만 원에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취득 직전인 2006. 12. 15.경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청한 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부동산 취득과 현황

가) ○○동 제1상가

(1) 원고는 1983. 10. 4. 취득한 ○○동 제1상가를 1994. 7. 14.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고, 1994. 7. 18.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현재 ○○동 제1상가 1층은 식육점(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과 생선가게(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로 임대된 상태이고, ○○동 제1상가 2층에서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2001. 12.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동 제1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8,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동 제2상가

(1) 원고와 피고는 2002. 1. 10. 부산 ○○○구 ○○동 ○○-893 대 16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동 제2상가'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2. 2. 23.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17. 여관수리비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동 제2상가 1층을 떡가게(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와 야채가게(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로, 2층을 가정집으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동 제2상가 차임 합계 월 200만 원은 피고가 모두 수령하다가 2011년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 100만 원 씩 나누어 수령하였고, 다시 2011. 7.경부터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모텔

(1) 피고는 2012. 8. 7.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 15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005,628,13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모텔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현재 아들 임EE 등과 함께 이 사건 모텔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448,722,800원

나) 피고의 순재산 : 2,462,577,989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2,911,300,789원

[제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제3호증의 1~7, 제4호증의 1~5,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제28호증의 1, 2,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여OO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모텔과 HH동 임야의 시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최소 57억 원, HH동 임야의 시가는 최소 6억 원이라면서 위 모텔 시가를 21억 897만 원, 위 임야 시가를 2억 6,400만 원으로 감정한 감정인 여OO의 시가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룬다.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제35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의 가액이 60억 원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 여OO는 이 사건 모텔과 HH동 임야의 감정에 있어 위 모텔 영업권의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건물과 대지 그 자체만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OO 영업권의 가치 역시 상당한 것이 일반적인 점, ② 반면 피고가 2012. 8.경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부산농업협동조합의 의뢰로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에는 위 모텔 토지와 건물가액을 2,585,859,180원으로 산정한 후 '수익방식' 평가를 적용하여,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해 자본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간 유효소득은 6억 6,024만 원, 연간 순영업소득은

363,132,000원으로 수익방식에 의한 이 사건 모텔(HH동 임야는 포함되지 아니함)의 평가액은 30억 2,610만 원인 점, ③ 피고는,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신고한 사업소득이 합계 100,251,714원, 피고가 같은 기간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5,208,350원, 피고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54,381,350원임을 들어 이 사건 모텔의 수익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모텔 영업은 현금 유입이 많아 탈세가 쉽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 산출한 이 사건 모텔의 유효소득 등은 원고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모텔 인근 지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HH국제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변적 요인 역시 감정인 여OO의 감정결과에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 여OO의 시가감정결과보다는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의 수익방식 평가결과가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의 실제 가치에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위 수익방식 평가결과를 반영한 30억 2,6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HH동 임야의 OO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인 여OO의 시가감정결과가 실제 가액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달리 감정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임야의 시가는 감정인 여OO의 감정결과에 따라 2억 6,400만 원으로 본다.

2) 임EE 명의의 부산 GG구 PP동 ◎◎-1 대 201㎡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EE 명의의 위 토지 매수자금이 이 사건 모텔 운영 수익으로 마련

한 것이라면서 위 토지 역시 원·피고의 분할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임EE은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운영을 도왔고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위 토지의 가액 1억 6,470만 원이 임EE의 몫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거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토지를 임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주장 및 판단은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중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 참조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특히 최근 이 사건 모텔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이고 원고는 음주 습벽 등으로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그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모텔 영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인 점, 원고의 음주 습벽과 별론으로 원·피고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고, 이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들이 이 사건 모텔을 마련하는 기반의 하나가 된 것 역시 사실인 점, 이 사건 모텔의 운영으로 피고는 상당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원고는 ◎◎동 제2상가의 월 차임 외에 별다른 수익 기반이 없어 앞으로의 예상 소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 등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OO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모텔과 HH동 임야의 현물분할을 구하나, 이를 원·피고의 공유로 할 OO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경매분할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걸쳐 이 사건 모텔을 앞으로 계속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의 수익기반인 이 사건 모텔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절차에 맡기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한 점 등을고려하면, 경매분할 역시 적합하지 아니하여, 원칙대로 현금정산의 방법을 택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5억 7,000만 원

[계산식] 가)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2,911,300,789원 \times 35% = 1,018,955,276원(원 미만 버림)

나) 위 가)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018,955,276원 - 448,722,800원 = 570,232,476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5억 7,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

별지1

부동산 목록

1. 부산 GG구 HH동 ○○-12 대 1261m²
2. 부산 GG구 HH동 ○○-1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숙박시설(여관)
지하1층 47.24m², 1층 63.69m², 2~6층 각 229.98m²
3. 부산 GG구 HH동 ○○-15 임야 400m². 끝.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적극재산	1	○○동 제2상가	513,722,800	갑3-1, 감정인 여00의 시가감정결과	-피고는 위 상가의 실 소유자는 피고이고 원고 명의로 되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등만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위 상가 취득에 기여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여도 산정에 참작하면 충분함	
		2	우체국예금	5,000,000	일치진술		
		소계		518,722,800			
		소극재산	1	○○동 제2상가 중 떡집 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		일치진술
	2		○○동 제2상가 중 야채가게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	일치진술		
	3		○○동 제2상가 중 주택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갑22-1		
	소계		70,000,00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48,722,800			
	피고	적극재산	1	○○동 제1상가	530,912,400	갑3-3, 4, 감정인 여00의 시가감정결과	
			2	이 사건 모텔	3,026,100,000	갑3-5, 6, 이 법원의 서부산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HH동 임야	264,000,000	갑3-7, 감정인 여00의 시가감정결과		
4			국민은행 예금 (*****)	34,001,864	이 법원의 (주)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별거일 기준		

	5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50,000,000	이 법원의 서부산농협에 대한 정보제출명령 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3. 3. 19. 해지 출금으로 보유 추 인 인정	
	6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20,000,000			
	7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20,000,000			
	8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10,000,000			
	9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20,000,000			
	10	서부산농협 정기예금 (***_****_****_**)	10,000,000			
	1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무배당 라이프케어보 험	13,660,844	일치진술		
	1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온마음상조보험	2,881	일치진술		
	13	산타페 자동차 (2010년형)	18,900,000	갑31-1	-피고는 위 승용차들 이 아들 임태과 둘째 사위의 소유라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14	리베로 승용차 (2005년형)	5,000,000	갑31-2		
	소계		4,022,577,989			
	소극재산	1	○○동 제1상가 중 식육점 보증금반환채 무	30,000,000	일치진술	
		2	○○동 제1상가 중 생선가게 보증금반환 채무	30,000,000	일치진술	
		3	서부산농협 대출금	1,500,000,000	원고 인정	
소계		1,560,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462,577,989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2,911,300,789				

끝.